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7. 29. ~2022. 9. 7.)

2) 행정규제 :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중 시멘트 제조업(23311)	2023년 7월 1일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6735